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06년 8월 25 일
발 의 자 : 연만흠·조영재·강태원
김환동·오용식·송은섭
김법기(7인)

개정이유

오기된 조문을 정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명시·조문 표현방식 통일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시 잘못 표기된 안 제24조제3항의 “제29조”를 “제30조”로 정정(안 제24조제3항)
- 나. 관련조항 명시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(안 제41조제2항제3호)
 - 3.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⇒ 3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
- 다. 안 제41조제2항제4호 중 조례제정시 잘못 표기된 “제23조제1항, 제2항, 제3항”을 “제24조”로 정정하고, 제3호와 표현 방식을 통일함(안 제41조제2항제4호)
 - 4. 제23조제1항, 제2항, 제3항에 관한 사항 ⇒ 4.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령 발취

조례 제 호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중 “제29조”를 “제30조”로 한다.

제4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
4.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24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<u>제29조</u>의 규정에 의하고,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</p>	<p>제 24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<u>제30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 41조(감독) 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.</p> <p>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제23조제1항, 제2항, 제3항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 41조(감독) ①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54조 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4.12.30]

第71條 (代行事業의 費用負擔) ①公社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을 代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負擔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條例로 정한다.

[本條新設 1980.1.4]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63조 (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)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, 사전조사,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
2.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·인건비 및 부대경비
3.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

4.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

5.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

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,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,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.

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□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0조(비용의 부담)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
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

3.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

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기타 사업자의 대행사업 비용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.